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4. 21.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4월 8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4. 19.)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환)

가. 제안이유

-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시(2020.11.17.) 의결한 규약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감사신설, 회장도시 사무국 조항 마련, 임원 역할 명기 (제4조 임원)
- 임원임기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 (제5조 임원의 임기)
- 실무협회의 세부 조항 정비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 경비부담 및 사용에 대한 세부 조항 정비 (제12조 경비부담)
- 회계보고 및 결산 조항 정비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 운영세칙 조항 정비 (제15조 운영세칙)
- 별지 서식 추가 (가입신청서 및 위임장)
- 회원도시 현황 수정 (신규가입도시 반영)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 본 동의안은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2018년 제정한 운영 규약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함에 따라 운영규약 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중앙(교육부)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2018년 3월 31일 31개(서울 16개) 기초단체 참여로 설립됨. 현재 서울 24개 자치구(중구 제외)를 비롯한 전국 61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영등포구는 최초 설립부터 참여하여 2018년 제1차 정례회에서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음.

###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 1명을 추가하였고,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두는 조항을 신설함.
- 안 제5조에서는 임원임기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였고,
- 안 제11조에서는 회장이 실무협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는 등 실무협회의 세부 조항을 정비하였고,
- 안 제12조는 협의회 분담금 납부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면서 분담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 협의회 분담금: 연 500만원]

- 안 제13조는 회계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감사 실시 및 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함.
- 마지막 안 제15조에서는 규약 외의 운영 세칙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협의회 보고를 하도록 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이번에 제출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범위 내에서 개정된 것으로, 협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공통으로 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른 사항으로 관계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안 번호	334
----------	-----

제출연월일 : 2021.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시(2020.11.17.) 의결한 규약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개 정 일:** 2020.11.17. (제정일: 2018. 3.31.)

**3. 개정사유:** 2018년 제정된 규약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4. 주요 개정 내용

- 가. 감사신설, 회장도시 사무국 조항 마련, 임원 역할 명기 (제4조 임원)
- 나. 임원임기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 (제5조 임원의 임기)
- 다. 실무협의회의 세부 조항 정비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 라. 경비부담 및 사용에 대한 세부 조항 정비 (제12조 경비부담)
- 마. 회계보고 및 결산 조항 정비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 바. 운영세칙 조항 정비 (제15조 운영세칙)
- 사. 별지 서식 추가 (가입신청서 및 위임장)
- 아. 회원도시 현황 수정 (신규가입도시 반영)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15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 별첨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전 · 후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p><b>제4조 [임원]</b>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둔다.</p> <p>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p> <p>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u>사무총장을 선임한다.</u></p> <p>④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u>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u></p> <p>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u>처리한다.</u></p>	<p><b>제4조 [임원]</b>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u>복수의 부회장과 사무총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u>                      (개정 2020.11.17.)</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 및 <u>감사를 선임한다.</u>                      (개정 2020.11.17.)</p> <p>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u>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u>                      (개정 2020.11.17.)</p> <p>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u>지원한다.</u>                      (개정 2020.11.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감사를 위한 감사 1명 도입</li> <li>제반업무를 수행 하는 회장도시 지자체에 사무국을 두는 조항 삽입</li> <li>사무국 설치 조항에 따라 사무총장 역할 변경</li> </ol>
<p><b>제5조 [임원의 임기]</b>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p>	<p><b>제5조 [임원의 임기]</b>                      ①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② <u>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u>                      (개정 2020.11.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정에 의한 임원 임기 변동에 따른 임기 해석 조항 마련</li> </ol>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p><b>제11조 (실무협의회 등)</b></p> <p>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u>상정 안전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u>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u>회원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및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u></p> <p>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p> <p>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p>	<p><b>제11조 (실무협의회 등)</b></p> <p>① <u>회장은</u>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u>실무사항을 검토하는</u>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p> <p>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u>회원 도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협의회장 지자체가 주관한다.</u> (개정 2020.11.17.)</p> <p>③ 실무협의회는 <u>협의회의 상정 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결된 안전사항을</u>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0.11.17.)</p> <p>④ 실무협의회는 협의 안건의 실무 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u>전체 회원도시에게 공유하며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u> (개정 2020.11.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항 정비</li> <li>2. 현재 운영되는 실무협의회의 상황에 맞춰 구성원을 전체 회원도시로 명시, 아울러 교육청 소속 공무원 삭제 (필요시 참여)</li> <li>3. 실무협의회 구체적 역할명시</li> <li>4. 실무협의회 결과에 대하여 전체 회원도시와 공유하는 근거</li> </ol>
<p><b>제12조 (경비부담) 협의회</b> <u>공동 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 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u></p>	<p><b>제12조 (경비부담)</b></p> <p>① 협의회 공동사업에 따른 <u>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년 따로 정하는 분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한다.</u> (개정 2020.11.17.)</p> <p>② <u>납부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의회 분담금 납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정비</li> </ol>

	<p><u>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총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u></li> <li>2. <u>포럼, 박람회 등 혁신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u></li> <li>3. <u>혁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u></li> <li>4. <u>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사업</u></li> <li>5. <u>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u></li> <li>6. <u>그 외 협의회 구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u></li> </ol> <p>(개정 2020.11.17.)</p>	
<p><b>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b></p> <p>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② 협의회는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u>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b>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b></p> <p>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② 협의회는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u>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개정 2020.11.17.)</p> <p>③ <u>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u></p> <p>(개정 2020.11.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의회 회계 관장에 대하여 사무국(회장도시)로 명시</li> <li>2. 결산보고에 대한 시점 구체적 명시</li> <li>3. 감사 지자체의 결산 근거 조항 마련</li> </ol>
<p><b>제15조 (운영세칙)</b>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협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u></p>	<p><b>제15조 (운영세칙)</b>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실무협회를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협의회에 보고한다.</u></p> <p>(개정 2020.11.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약 외의 운영 세칙에 대하여 실무협회를 거쳐 회장이 정하게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li> </ol>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18. 3. 31. 제정

2020. 11.17. 개정

**제1조 [목적]**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 [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총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11.17.>

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 및 감사를 선임한다. <개정 2020.11.17.>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개정 2020.11.17.>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0.11.17.>

**제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7.>

**제6조 [총회 및 의결]**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 또는 국·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사항을 검토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도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협의회장 지자체가 주관한다. <개정 2020.11.17.>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결된 안건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0.11.17.>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전체 회원 도시에게 공유하며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개정 2020.11.17.>

**제12조 [경비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업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년 따로 정하는 분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7.>

② 납부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총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박람회 등 혁신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혁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4.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외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개정 2020.11.17.>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17.>

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개정 2020.11.17.>

**제14조 [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총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협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0.11.17.>

- 제16조 [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다.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가입신청서

아래와 같이 가입을 신청합니다.

구분	신청내용		
기관 현황	자치단체명	시·도명	
	기관주소		
	단체장성명		
	교육담당부서	국	과(사업소)
	과장 ○○○	○○팀장 ○○○	담당 ○○○
	010-0000-000	010-0000-000	010-0000-000
	abcd@korea.kr	abcd@korea.kr	abcd@korea.kr
학교 현황	총인구수	0,000,000명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00개	0,000명
	중학교	00개	0,000명
	고등학교	00개	0,000명
	계	000개	00,000명
		(기준일 : )	
재정 규모	총예산규모	000,000백만원	
	교육경비보조금	000,000백만원	
		(기준일 : )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귀하**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위임장

### 1. 위임받는 자

성 명		연락처	
소 속		직급(직위)	

### 2. 위임하는 자

성 명		연락처	
소 속		직급(직위)	

### 3. 위임사유

--

본인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6조제6항에 의거 정기총회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시장(군수·구청장)    ○○○ (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귀하**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정부 현황

□ 회원도시 현황: 6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021년 3월 23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건제순)

지 역	지 방 자 치 단 체 명	비 고
서 울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4
부 산	북구, 연제구, 금정구	3
인 천	미추홀구	1
광 주	-	0
대 전	유성구, 대덕구	2
울 산	중구	1
경 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명시, 오산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여주시, 동두천시	18
강 원	홍천군	1
충 북	보은군	1
충 남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서천군	4
전 남	여수시, 순천시, 곡성군, 구례군, 영암군, 완도군	6

※ 2020년도 신규가입 : 파주시, 부산 금정구, 안성시, 영암군, 동두천시, 서천군

2021년도 신규가입 : 대전 유성구, 이천시, 성남시, 용인시, 완도군